

2학기 정기고사 코로나-19 상황별 대처 및 성적처리 방안

분류	대응 방안	후속조치 및 인정점 부여
■ 학진 받은 학생 발생	⇒ ■ (학교) 지필평가 중단 ■ (해당 학생) 등교 중지	⇒ ■ (학교) - 방역조치 등 상황 완료 후로 지필평가를 연기하거나 평가 방법 등을 조정 - 지필평가 시기 및 평가 방법은 도교육청의 지침을 받아,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시행 * 증빙서류 : 입원치료통지서
■ 격리통지 받은 학생 발생	⇒ ■ (학교) 사태의 심각성 여부를 고려하여 이후 지필평가 중단 혹은 실시 지속 여부 판단	⇒ ■ (학교) 지필평가 지속 경우 - (해당 학생) 출석인정 및 인정기준점수 100%
■ 가족(동거인)이 격리통지 받은 학생 발생	⇒ ■ (학교) 지필평가 중단 경우 ■ (해당 학생) 등교 중지	⇒ ■ (학교) 지필평가 중단 경우 - 상황 완료 후로 지필평가를 연기하거나 평가방법 등을 조정 - 지필평가 시기 및 평가 방법은 도교육청의 지침을 받아,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시행 * 증빙서류 : 격리통지서
■ 의심증상자(발열, 호흡기증상) 발생	⇒ ■ (학교) 지필평가 지속 ■ (해당 학생) 등교 중지 - 보건실에서 건강상태 확인 - 일시적관찰실(난타실)에서 대기 후 학부모에게 학생 인계	⇒ ■ (해당 학생) - 출석인정 및 인정기준점수 100% * 증빙서류 1. 코로나19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: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, 문자 통지 사본 2. 코로나19 미실시 경우 :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, 진료확인서 등
■ 고위험군 학생	⇒ ■ (학교) 지필평가 지속 - 고위험군학생 파악(보건실) - 별도 시험실 미제공	⇒ ■ (미등교 해당 학생) - (심각·경계 단계) 출석인정 및 인정기준점수 100% - (관심·주의 단계) 질병 결석 및 인정기준점수 80% * 증빙서류 : 고위험군임을 확인하는 진단서 (소견서)
■ 교외체험학습 (가정학습)	⇒ ■ (학교) 정기고사 기간에는 교외체험학습 불허	⇒ ■ (미등교 해당 학생) - 미인정결석 및 최하점의 차하점
■ 등교 중지자 (등교 전)	⇒ ■ (학교) 지필평가 지속 ■ (해당 학생) 등교 중지 - 반드시 등교 전 자가진단, 등교 후 학생건강상태 자가진단 불가 - 등교중지 결과는 담임선생님께 바로 통지	⇒ ■ (해당 학생) - 출석인정 및 인정기준점수 100% * 증빙서류(1, 2 모두 필수) : 등교중지 당일 일자 명시 1. 학생건강상태 자가진단 사이트 출력물 2.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